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정 2015.07.

개정 2016.06.

개정 2019.01.

개정 2020.04.

개정 2023.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에 소재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하 ‘경기콘랩’ 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용어의 정의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이용 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1항과 동일하다.

1. 회원 : 경기콘랩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2. 이용자 : 경기콘랩을 이용하는 자
3. 방문객 : 경기콘랩 서비스 이용 외 목적으로 방문한 개인
4. 운영자 : 경기콘랩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의 관계자

제3조(개관 및 휴관) 경기콘랩은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평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정공휴일(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2.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회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 그 외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기콘랩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이용시간) 경기콘랩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콘랩 공간은 회원 대상으로 평일 10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운영한다.

2. 시설 및 물품의 사용 및 대관 시간은 제1항 개관 시간 안에서 정한다.
3. 경기콘랩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축소, 또는 휴관일로 지정하여 변경 운영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개관 시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운영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출입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를 한 자
2.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재난, 도난,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4.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단, 법정대리인을 동반하는 경우 허용)
5.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는 자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예외)
6.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 등 정부 및 경기콘랩의 방역관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경기콘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②제5조 1항 이외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퇴실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등록 또는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등록이 발각된 경우
2. 소란스러운 행위 및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프로그램 운영 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도난 행위
5. 타인의 정보 도용
6. 경기콘랩 내에서의 영업 활동 등 상업행위 및 영리행위
7. 타인을 “스톡”(stalk)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스톡(stalk) :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을 모두 포함)
8. 시설물 파손
9. 대관시설 및 물품의 무단 반출
10. 대관시설 및 물품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1. 소음 등 공해의 발생, 업무방해 등으로 타 회원 및 경기콘랩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2. 회원 개인 물품을 적치 및 방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13. 인화성,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14. 경기콘랩에 사전 통지 없이 개인용 냉·난방 기자재를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15. 경기콘랩 내 흡연 및 음주 행위
16.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17.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제외)
18. 기타 경기콘랩 관리 필요에 따른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6조(행위의 제한) ①경기콘랩 이용자는 동 지침 제5조(출입제한) 및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이용 지침」 제23조(이용자의 의무)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의 발각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지침」 제3장 회원 자격 제한 및 정지조치에 따라 출입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③감염병 유행 확산 등에 따라 발표된 정부 및 경기콘랩의 방역관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퇴실 및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2장 시설 및 물품의 권한, 대관, 출입제한 등

제7조(권한) 시설 및 물품사용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회원에 한한다.
2. 시설 및 물품의 점검·보수·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대관 · 대여) 시설의 대관 및 물품의 대여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대관 및 물품의 대여는 회원에 한하며, 회원의 등록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지침」 에서 따로 정한다.
2. 대관시설 및 물품의 범위, 대관의 기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3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에서 정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역)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에 출입 제한 구역을 두고 운영한다.

1. 경기콘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 가. 인포데스크
 - 나. 운영사무실

- 다. 그 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
2.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3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

제10조(시설의 범위) 경기콘랩 내 시설(부대설비 포함)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콘랩 시설은 사용신청 및 관계자 승인을 통해 외부에서 사용하는 「대관시설」 과 이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으로 한다.
2. 「창작시설」 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장비 운영 지침」 에 따라 이용 범위를 정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제11조(시설의 종류) 경기콘랩 시설은 제10조(시설의 범위)에 따라 「대관시설」, 「공용 시설」, 「창작시설」, 「부대시설」, 「물품」 으로 분류하며 종류는 그 다음과 같다.

1. 「대관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별똥별(L2) : 7층 1개실 100석 규모, 강연·세미나 및 네트워킹 공간
2. 「공용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새벽별(L1) : 7층 8석 규모, 전시 및 협업공간
 - 나. 셋별(M1~M3) : 7층 3개실(M1, M2, M3)
 - 다. 여우별(L3) : 7층 1개실 20석 규모, 강의실
 - 라. 웰컴데이블 : 7층 4석 규모
3. 「창작시설」 (고래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영상촬영스튜디오(S1) : 7층 1개실
 - 나. 녹음실(S2) : 7층 1개실 2석 규모
 - 다. 영상편집실1(S3) : 7층 1개실 2석 규모
 - 라. 영상편집실2(S4) : 7층 1개실 2석 규모
 - 마. 사진촬영스튜디오(S5) : 7층 1개실
4. 「부대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인포데스크 : 7층 1개 2석 규모
5. 「물품」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 나. 음향 : 스피커, 앰프, 무선 마이크 등
 - 다. 업무용품 : 강의용PC, 인쇄용PC, 복사기 등

- 라. 소모품 : 리모콘, 각종 케이블, 마커·지우개, 인쇄용지 등
 - 마. 기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6.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추가 및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신청 및 이용방법) ① 경기콘랩의 「대관시설」, 「공용시설」, 「창작시설」 신청은 경기콘랩 회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각 시설 및 장비별 신청 및 접수 처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대관시설」, 「공용시설」, 「창작시설」의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시설」 : 별똥별(L2)
 - 가. 신청방법 : 경기콘랩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
 - 나.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 다. 신청내용 : 문화콘텐츠 및 취·창업 관련된 비영리 목적의 행사, 전시, 교육 등
 - 라. 예약가능기한 : 사용 4주 전부터 1주 전까지
 - 마. 대관제한 : 사전 협의 없이 4회 이상 무단 당일 취소, 무단 미 사용할 경우
2. 「공용시설」 : 셋별(M1~M3)
 - 가. 신청방법 : 경기콘랩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
 - 나. 신청대상 : 경기콘랩 회원
 - 다. 신청내용 : 회의실 사용
 - 라. 이용제한 : 사전 협의 없이 4회 이상 무단 당일 취소, 무단 미 사용할 경우
4. 「창작시설」 : 영상촬영스튜디오(S1), 녹음실(S2), 영상편집실1(S3), 영상편집실 2(S4), 사진촬영스튜디오(S5)
 - 가. 신청방법 : 경기콘랩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
 - 나. 신청대상 : 경기콘랩 회원
 - 다. 지원내용 : 1인 1실 당 1일 4시간까지 무상 이용
 - 라. 예약가능기한 : 예약오픈일부터 이용일 당일까지 (단,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
 - 마. 대관제한 : 사전 협의 없이 4회 이상 무단 당일 노쇼, 무단 미 사용할 경우

③ 「대관시설」, 「공용시설」, 「창작시설」의 이용시간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4조(이용시간)에 따른다.

④ 경기콘랩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시설」, 「공용시설」, 「창작시설」의 신청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대관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경기콘랩 자체 프로그램에 우선 대관하며, 이하 타 기관 및 개인의 대관 신청은 운영상 필요 및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4조(대관내용의 변경) 운영상 필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자는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지 않는다.

1. 대관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 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사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6조(시설의 신청제한 및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시설」의 대관신청을 받지 않거나 이용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2. 대관조건 및 사용 주의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부가사항 별도협약을 위반한 때
4. 행사 내용이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
5.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사
6. 영리 목적의 행사 및 교육, 전시 등
7. 기타 정치선전, 특정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사
8.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12조(사용시간) 및 제13조(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을 위반한 자
9.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제1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을 대관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용자는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에는 대관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이용자는 「물품」 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6.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과실로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

였을 경우, 책임의 소지는 이용자에게 있다.

8.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기준에 의거하여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1.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제1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장비 이용 지침」 제10조(손실에 대한 책임)에 따라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범위, 변상 방법 등을 정하고 지체 없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 홍보문의 협의) 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4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

제20조(시설 및 물품사용료)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 기타 부가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21조(복사·인쇄 요금) 복사·인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며 1인 1일 10매의 제한을 둔다. 해당 제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제22조(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등 변상)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은 다음과 같으며,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범위, 변상 방법 등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장비 이용 지침」 제10조(손실에 대한 책임)에 따라 정한다.

1.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제5장 안전사고 주의 및 책임

제23조(안전사고) 경기콘랩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는 경기콘랩 내에서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및 이용자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